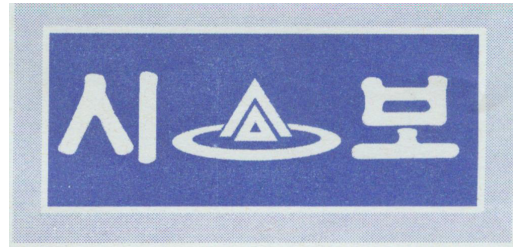


#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관의 장 |
| 람 |       |

제 489호 2013. 3. 15.(금)

## 【규 칙】

- 제434호 공주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 1
- 제435호 공주시 재정운용상황의 공개 규칙 폐지규칙 ..... 3
- 제436호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
- 제437호 공주시 사적지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13

## 【고 시】

- 제2013 - 36호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변경)·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14
- 제2013 - 39호 대통령천 하상준설공사 시행계획고시 ..... 31

## 【공 고】

- 제2013 - 294호 소화지구 농경지리모델링 지적공부확정·시행 공고 ..... 32
- 제2013 - 347호 공인 폐기 공고 ..... 33
- 제2013 - 356호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및 공주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5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담당관 ☎ 840-2052)

공주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3월 15일

공주시 규칙 제434호

### 공주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공주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공주시 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공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여성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3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의 투자심사관련 지침 또는 매뉴얼 등을 준용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재정운용상황의 공개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3월 15일

공주시 규칙 제435호

## 공주시 재정운용상황의 공개 규칙 폐지규칙

공주시 재정운용상황의 공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3월 15일

공주시 규칙 제436호

###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식품진흥기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규칙은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식품진흥기금”을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주시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계리하여야하며”를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로,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주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공주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로, “대표하고”를 “대표하고,”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 위원을 해촉”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어려울 때”를 “어려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실하였을 때”를 “상실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본인이 위촉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제5조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호 서식”을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호 서식”을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호 서식”을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할구역 안”을 “관할구역”으로,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휴·폐업중인”을 “휴업·폐업 중인”으로, “진행중”을 “진행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식품접객업소중”을 “식품접객업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를 “이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를 “통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3퍼센트”를 “1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을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거치기간”을 “거치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를 “통지”로 하고, 같은 항 제

1호 중 “사용한 때”를 “사용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되었을 때”를 “되었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원받고”를 “지원받고,”로, “변경하였을 때”를 “변경하였을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통보”를 “통지”로, “없는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사항을”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규칙은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br/>----- 시행에<br/>-----<br/>-----.</p>  |
| <p>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p> | <p>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br/>-----<br/>-----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주시 식품진흥기금-----<br/>-----<br/>-----.</p> |
| <p>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 업무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p>  | <p>② -----<br/>-----<br/>----- 따라 -----<br/>-----<br/>-----.</p>   |
| <p>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산을 부담하여야</p>  | <p>③ -----<br/>----- 회계<br/>----- 처리 하여야 하며-----<br/>--- 모든 -----</p>  |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공주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생략)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본인의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제5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공주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  
-----대표하고,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1. 장기치료가 필요한 -----  
- 그 밖-----  
----- 어려운 경우
2. -----  
----- 상실한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제5조(회의) -----  
-----  
-----  
-----  
----- 긴급한 -----  
-----

지 아니하다.

제6조(용자신청서의 제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용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영업시설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이행 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4. (생략)

제7조(용자대상 선정) ①시설개  
선자금 용자대상자는 공주시 관  
할구역 안에서 식품위생관련 영  
업을 하는 자중 시장의 영업허  
가(신고)를 받고 1년이상 영업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용자신청 대상자에서 제  
외한다.

1. (생략)
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  
폐·변태영업행위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

-----.

제6조(용자신청서의 제출) ----  
제11조에 따라 -----

-----  
-----  
-----.

1. -----  
---- 제1호서식)
2. -----  
제2호서식)
3. ----- 제3  
호서식)
4. (현행과 같음)

제7조(용자대상 선정) ① -----  
----- 관  
할구역-----  
-----  
----- 1년 이상 -----  
-----.

② -----  
-----  
-----.

1. (현행과 같음)
2. 휴업·폐업 중인 -----  
-----  
-----

이상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는 업소

-----  
----- 진행 중-----  
-----

3.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다만, 화장실 개선 자금은 예외로 한다

3. 식품접객업소 중 -----  
----- . -----  
-----

4. 기 용자받은 업소

4. 이미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용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검토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용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제6조에 따라 -----  
-----  
-----  
-----  
-----  
-----  
-----

④ 시장은 확정된 용자대상업소와 용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용자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한다.

④ -----  
-----  
----- 통지-----  
----- .

제8조(용자 및 상환조건) ① (생략)

제8조(용자 및 상환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용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 퍼센트로 한다

② ----- 1 퍼센트----- .

③ 용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

③ -----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  
----- 거치 기간 -----

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시장은 용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을 용자받은 후 2월 이내에 영업시설 개선을 하지 아니하거나 용자금을 목적 외의 타용도로 사용한 때

2. 용자금을 지원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가 취소 되었을 때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용자금을 지원받고 단란주점 · 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

제9조(용자금대출) ①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용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

-----.

④ -----

-----

-----

--- 통지-----

-----

-----

---.

1. -----

-----

-----

-----사용한 경우

2. -----

----- 되었

을 경우

3. -----

-----

----- 따라 -----

-----

4. ----- 지원받고, -----

-----

변경하였을 경우

제9조(용자금대출) ① -----

----- 통지-----

----- 없

으면 -----

야 한다.

②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매 분기말 경과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금운용 관리상황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용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 따  
른다.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  
-----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  
-----.

② -----  
----- 소속  
공무원에게 -----  
----- 따라야  
-----.

제11조(사후관리) 제10조제1항에

따라 -----  
-----  
-----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  
-----.

공주시 사적지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  
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3월 15일

공주시 규칙 제437호

### 공주시 사적지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공주시 사적지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변경)·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당복합농공단지의 지정(변경)·실시계획(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경제과(041-840-236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3년 03월 05일

공 주 시 장

## ▣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변경)

1. 농공단지의 명칭 : 의당복합농공단지(변경없음)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 나. 면 적 : 기정 - 149,022㎡  
변경 - 147,933㎡ (감 1,089㎡)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건설자재 생산기업인 한일시멘트(주)의 시멘트(레미콘, 레미탈)공장을 입지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및 신규 고용창출을 도모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한일시멘트(주) 대표 원인상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기정 - 2008년 ~ 2012년 12월 31일

변경 - 2008년 ~ 2013년 6월 30일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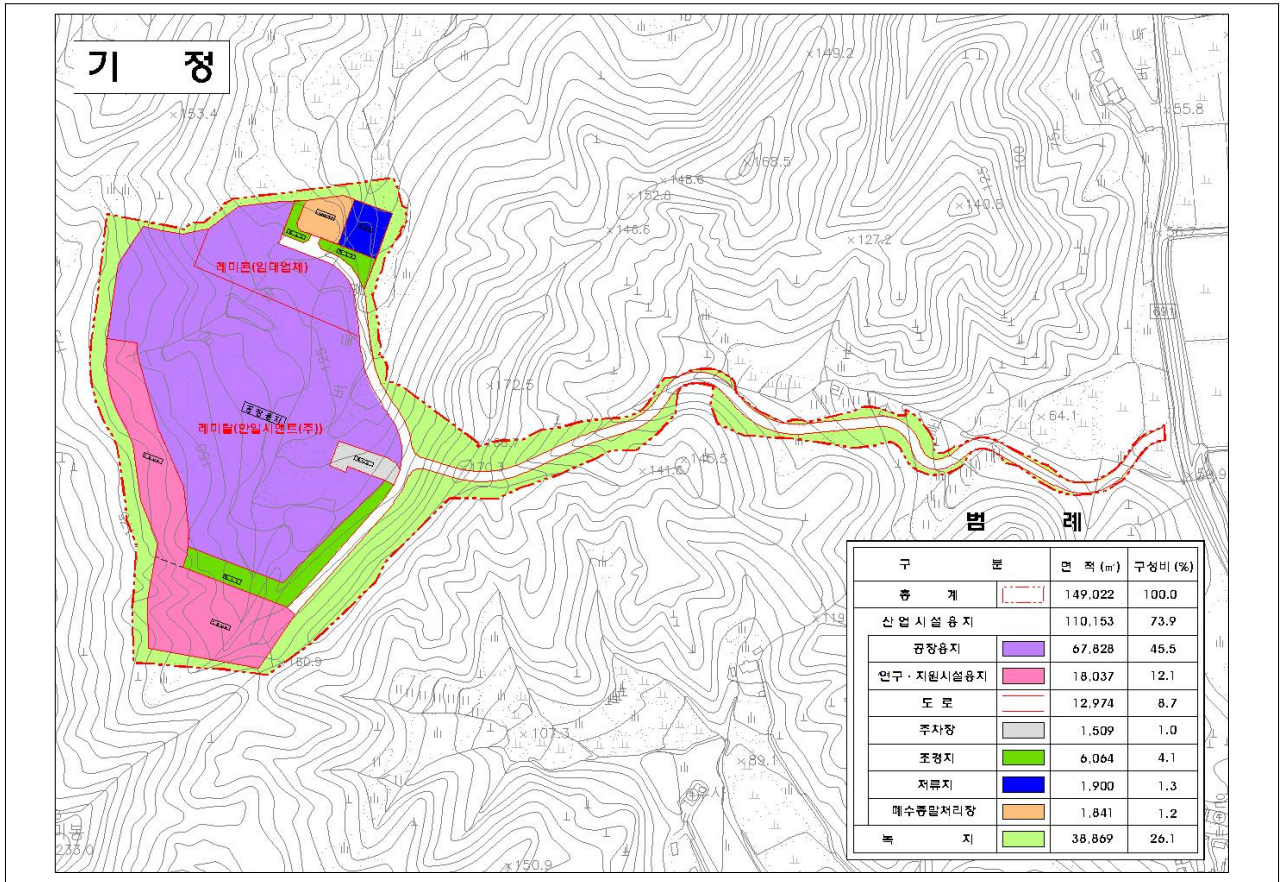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변경)표 >

| 구 분    | 면 적 (㎡)   |           |           | 구성비(%)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총 계    | 149,022.0 | 감)1,089.0 | 147,933.0 | 100.0  |
| 산업시설용지 | 110,153.0 | 감)1,711.1 | 108,441.9 | 73.3   |
| 녹 지    | 38,869.0  | 증)622.1   | 39,491.1  | 2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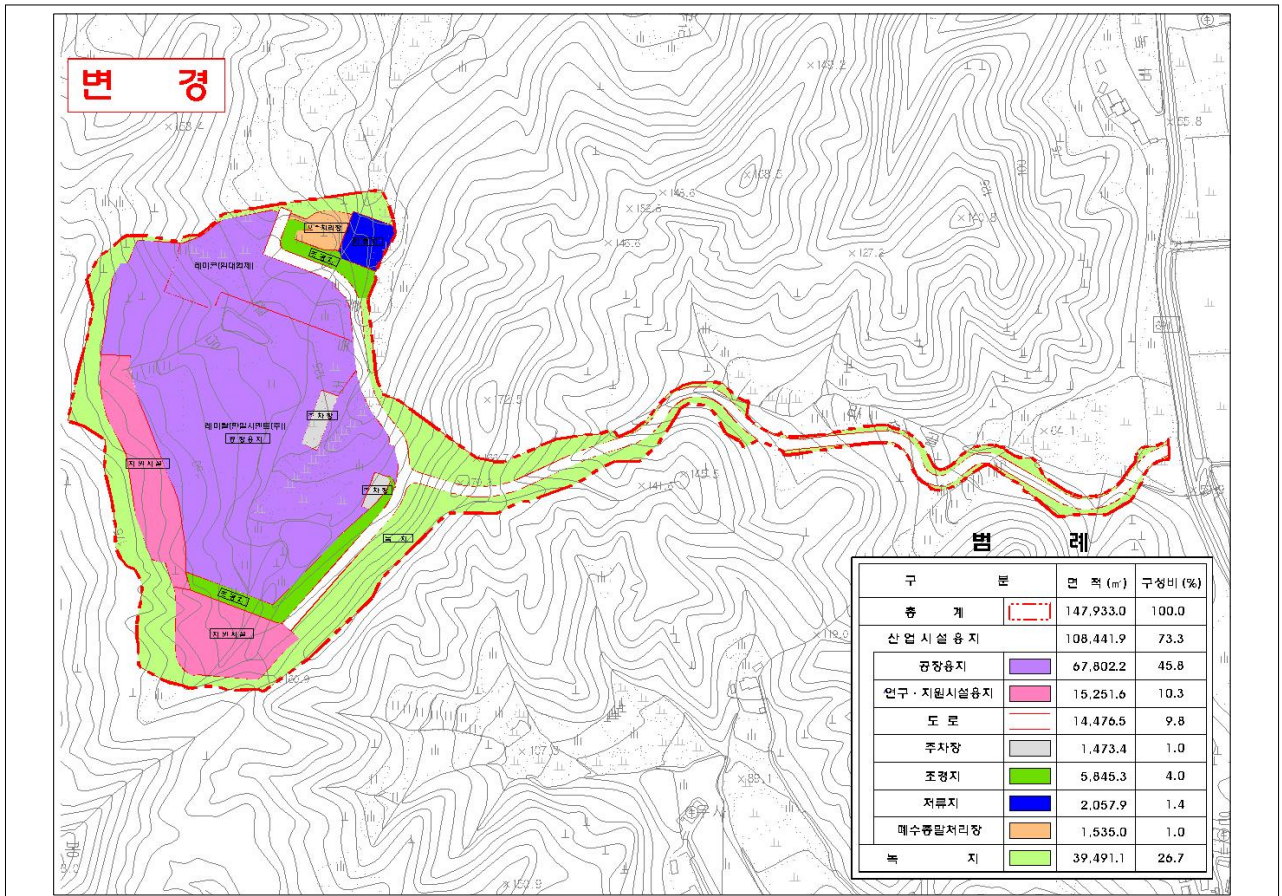
< 세부개발계획(변경)표 >

| 구 분       | 면 적 (㎡)          |           |           | 구성비(%)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 총 계       | 149,022.0        | 감)1,089.0 | 147,933.0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110,153.0        | 감)1,711.1 | 108,441.9 | 73.3     |      |
| 공장<br>용지  | 계                | 67,828.0  | 감)25.8    | 67,802.2 | 45.8 |
|           | 한일시멘트(주)<br>직접사용 | 57,641.99 | 감)931.39  | 56,710.6 | 38.3 |
|           | 임 대              | 10,186.01 | 증)905.59  | 11,091.6 | 7.5  |
| 연구·지원시설용지 | 18,037.0         | 감)2,785.4 | 15,251.6  | 10.3     |      |
| 도 로       | 12,974.0         | 증)1,502.5 | 14,476.5  | 9.8      |      |
| 주차장       | 1,509.0          | 감)35.6    | 1,473.4   | 1.0      |      |
| 조경지       | 6,064.0          | 감)218.7   | 5,845.3   | 4.0      |      |
| 저류지       | 1,900.0          | 증)157.9   | 2,057.9   | 1.4      |      |
| 폐수처리장     | 1,841.0          | 감)306.0   | 1,535.0   | 1.0      |      |
| 녹 지       | 38,869.0         | 증)622.1   | 39,491.1  | 26.7     |      |

### < 토지이용계획도 - 기정 >



###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 1) 도로계획

#### ◦ 도로(변경)총괄표

| 구분   |    |    | 노선수 |    | 연장(m)   |         | 면적(m <sup>2</sup>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합계   |    |    | 2   | 2  | 1,372.3 | 1,362.3 | 12,974.0            | 14,476.5 |    |
| 일반도로 | 중로 | 소계 | -   |    | -       |         | -                   |          |    |
|      |    | 3류 | -   |    | -       |         | -                   |          |    |
|      | 소로 | 소계 | 2   | 2  | 1,372.3 | 1,362.3 | 12,974.0            | 14,476.5 |    |
|      |    | 1류 | 2   | 2  | 1,372.3 | 1,362.3 | 12,974.0            | 14,476.5 |    |

#### ◦ 도로결정(변경)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국지도로 | 518.0 | 오페수처리장     | 연구·지원시설용지 | 단지내도로 | 농공단지  |       |    |
| 변경 | 소로 | 1  | 1  | 10    | 국지도로 | 512.8 | 오페수처리장     | 연구·지원시설용지 | 단지내도로 | 농공단지  |       |    |
| 기정 | 소로 | 1  | 2  | 10    | 국지도로 | 854.3 | 가산리 44-6번지 | 소로1-1     | 진입도로  |       |       |    |
| 변경 | 소로 | 1  | 2  | 10    | 국지도로 | 849.5 | 가산리 44-6번지 | 소로1-1     | 진입도로  |       |       |    |

### 2) 주차장계획(변경)

#### ◦ 주차장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m <sup>2</sup> )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⑤      | 주차장 | 의당면 가산리 산1 8-2임 일원 | 1,509.0             | 감)1,509.0 | -     |       |    |
| 변경 | ⑤-1    | 주차장 | 의당면 가산리 산1 8-2임 일원 | -                   | 증)510.3   | 510.3 |       |    |
| 변경 | ⑤-2    | 주차장 | 의당면 가산리 산1 8-7임 일원 | -                   | 증)963.1   | 963.1 |       |    |

### 3) 공원·녹지계획(변경)

#### ◦ 녹지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치              | 면적(m <sup>2</sup> )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⑦      | 녹지  | 완충녹지  | 의당면 가산리 산16임 일원 | 38,869.0            |         |          |       |    |
| 변경 | ⑦      | 녹지  | 완충녹지  | 의당면 가산리 산16임 일원 | 38,869.0            | 증)622.1 | 39,491.1 |       |    |

#### 4) 방재시설계획(변경)

◦ 우수지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m <sup>2</sup>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④        | 우수지 | 저류시설    | 의당면 가산리 산1 8-7입 일원 | 1,900.0             |         |         |         |    |
| 기정 | ④        | 우수지 | 저류시설    | 의당면 가산리 산1 8-7입 일원 | 1,900.0             | 증)157.9 | 2,057.9 |         |    |

#### 5)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

◦ 수질오염방지시설(오·폐수처리장)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m <sup>2</sup>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③        | 수질오염 방지시설 | 오·폐수 처리장 | 의당면 가산리 산1 8-7입 일원 | 1,841.0             |         |         |         |    |
| 기정 | ③        | 수질오염 방지시설 | 오·폐수 처리장 | 의당면 가산리 산1 8-7입 일원 | 1,841.0             | 감)306.0 | 1,535.0 |         |    |

### 8.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가.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총 용수량 (m <sup>3</sup> /일) | 공업용수량 (m <sup>3</sup> /일) | 생활용수량 (m <sup>3</sup> /일) | 비 고        |
|---------------------------|---------------------------|---------------------------|------------|
| 280                       | 200                       | 80                        | 단지 내 심정 개발 |

#### 나.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구 분    | 용수량 (m <sup>3</sup> /일) | 계획일 오·폐수량 (m <sup>3</sup> /일) |       | 비 고                              |
|--------|-------------------------|-------------------------------|-------|----------------------------------|
|        |                         | 기 정                           | 변 경   |                                  |
| 생활계 오수 | 80                      | 70.46                         | 70.46 | 분뇨 + 잡배수                         |
| 산업계 폐수 | 200                     | 60                            | -     | 산업계폐수는 전량 재이용수로 사용 되므로 폐수발생량은 없음 |
| 계      | 280                     | 130.46                        | 70.46 | -                                |

#### 다.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구 분    | 합계    | 폐기물 처리계획 |       |       |       |
|--------|-------|----------|-------|-------|-------|
|        |       | 소 각      | 매 립   | 재활용   | 위탁처리  |
| 총발생량   | 2.213 | 0.017    | 0.012 | 0.044 | 2.140 |
| 생활폐기물  | 0.073 | 0.017    | 0.012 | 0.044 | -     |
| 사업장폐기물 | 2.140 | -        | -     | -     | 2.140 |

라. 전력공급계획(변경)

| 구 분  |     | 부지면적 (m <sup>2</sup> ) | 전력원단위 (KW/천m <sup>2</sup> ·월) | 부하율 (%) | 전력수요 (MWh/년) | 비 고 |
|------|-----|------------------------|-------------------------------|---------|--------------|-----|
| 전력수요 | 기 정 | 110,153.0              | 207.52                        | 40      | 9,000        |     |
|      | 변 경 | 감)1,711.1              | -                             | -       |              |     |
|      | 변경후 | 108,441.9              | 207.52                        | 40      | 9,000        |     |

마. 통신공급계획(변경)

| 구 분 |     | 공장용지면적 (m <sup>2</sup> ) | 계획인구 (명) | 산정원단위  | 소요대수 (대) | 비고 |
|-----|-----|--------------------------|----------|--------|----------|----|
| 합 계 | 기 정 | 110,153.0                | 134      | 1회선/5인 | 27       |    |
|     | 변 경 | 감)1,711.1                | -        | -      |          |    |
|     | 변경후 | 108,441.9                | 134      | 1회선/5인 | 27       |    |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 번호  | 소재지 |       | 지번   | 지목 | 면적(m <sup>2</sup> ) |         | 소유자 주소               | 성명          | 공유 지분 | 관계인    |    |       |     | 비고 |
|-----|-----|-------|------|----|---------------------|---------|----------------------|-------------|-------|--------|----|-------|-----|----|
|     | 면   | 리     |      |    | 지적                  | 편입      |                      |             |       | 성명 및 칭 | 주소 | 권리의 류 | 종 내 |    |
| 합 계 |     |       |      |    | 기정                  | 620,724 | 149,022              |             |       |        |    |       |     |    |
|     |     |       |      |    | 변경                  | 621,545 | 147,933              |             |       |        |    |       |     |    |
| 1   | 기정  | 의당 가산 | 0-7가 |    |                     | 50      |                      |             |       |        |    |       |     |    |
|     | 변경  | 의당 가산 | 0-7가 |    |                     | -       |                      |             |       |        |    |       |     |    |
| 2   | 기정  | 의당 가산 | 44-3 | 답  | 821                 | -       |                      |             |       |        |    |       |     |    |
|     | 변경  | 의당 가산 | 44-3 | 답  | 821                 | 145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199 | 이용현         |       |        |    |       |     |    |
| 3   | 기정  | 의당 가산 | 44-6 | 답  | 605                 | 49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 시멘트   |       |        |    |       |     |    |
| 4   | 기정  | 의당 가산 | 49-1 | 임야 | 2,273               | 1,2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 시멘트4인 |       |        |    |       |     |    |
|     | 변경  | 의당 가산 | 49-1 | 임야 | 2,273               | 1,18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 시멘트4인 |       |        |    |       |     |    |
| 5   | 기정  | 의당 가산 | 54-1 | 임야 | 25,275              | 5,06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 시멘트4인 |       |        |    |       |     |    |
|     | 변경  | 의당 가산 | 54-1 | 임야 | 25,275              | 3,23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 시멘트4인 |       |        |    |       |     |    |
| 6   | 기정  | 의당 가산 | 54-2 | 임야 | 643                 | 64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 시멘트   |       |        |    |       |     |    |
| 7   | 기정  | 의당 가산 | 56-0 | 답  | 565                 | 56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 시멘트   |       |        |    |       |     |    |
| 8   | 기정  | 의당 가산 | 57-0 | 답  | 192                 | 19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 시멘트   |       |        |    |       |     |    |

| 번호 | 소재지 |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성명                  | 공유지분       | 관계인              |          |                     |           | 비고 |
|----|-----|------|----|--------|-------|---------|--------|---------------------|------------|------------------|----------|---------------------|-----------|----|
|    | 면   | 리    |    |        | 지적    | 편입      | 주소     |                     |            | 성명 및 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용          | 종 내       |    |
| 9  | 기정  | 의당   | 가산 | 58-0   | 답     | 5,012   | 5,01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   |                  |          |                     |           |    |
|    | 변경  | 의당   | 가산 | 58-0   | 답     | 5,012   | 4,91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   |                  |          |                     |           |    |
| 10 | 기정  | 의당   | 가산 | 60-0   | 답     | 4,658   | 3,8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1인 |                  |          |                     |           |    |
|    | 변경  | 의당   | 가산 | 60-0   | 답     | 4,658   | 3,78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1인 |                  |          |                     |           |    |
| 11 | 기정  | 의당   | 가산 | 60-1   | 임야    | 23,660  | 23,66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   |                  |          |                     |           |    |
| 12 | 기정  | 의당   | 가산 | 60-2   | 임야    | 4,141   | 1,91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   |                  |          |                     |           |    |
|    | 변경  | 의당   | 가산 | 60-2   | 임야    | 4,141   | 1,96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   |                  |          |                     |           |    |
| 13 | 기정  | 의당   | 가산 | 330-26 | 하천    | 4,389   | 2,597  | 국토해양부               | 국          |                  |          |                     |           |    |
|    | 변경  | 의당   | 가산 | 330-26 | 하천    | 4,389   | 1,739  | 국토해양부               | 국          |                  |          |                     |           |    |
| 14 | 기정  | 의당   | 가산 | 332    | 구거    | 3,419   | 71     | 농림수산식품부             | 국          |                  |          |                     |           |    |
|    | 변경  | 의당   | 가산 | 332    | 구거    | 3,419   | 292    | 농림수산식품부             | 국          |                  |          |                     |           |    |
| 15 | 기정  | 의당   | 가산 | 산15    | 임야    | 29,222  | 1,8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4인 |                  |          |                     |           |    |
|    | 변경  | 의당   | 가산 | 산15    | 임야    | 29,222  | 2,25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4인 |                  |          |                     |           |    |
| 16 | 기정  | 의당   | 가산 | 산15-2  | 임야    | 935     | 23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4인 |                  |          |                     |           |    |
|    | 변경  | 의당   | 가산 | 산15-2  | 임야    | 935     | 17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4인 |                  |          |                     |           |    |
| 17 | 기정  | 의당   | 가산 | 산16    | 임야    | 95,729  | 9,84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4인 |                  |          |                     |           |    |
|    | 변경  | 의당   | 가산 | 산16    | 임야    | 95,729  | 10,2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4인 |                  |          |                     |           |    |
| 18 | 기정  | 의당   | 가산 | 산16-2  | 임야    | 932     | 28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4인 |                  |          |                     |           |    |
|    | 변경  | 의당   | 가산 | 산16-2  | 임야    | 932     | 27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4인 |                  |          |                     |           |    |
| 19 | 기정  | 의당   | 가산 | 산18-2  | 임야    | 195,489 | 38,74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   | 155,884 /195,489 | (주)한일시멘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근저당권, 지상권 |    |
|    | 변경  | 의당   | 가산 | 산18-2  | 임야    | 195,489 | 39,97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   | 155,884 /195,489 | (주)한일시멘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근저당권, 지상권 |    |
| 20 | 기정  | 의당   | 가산 | 산18-5  | 임야    | 29,857  | 21,897 |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339    | 이정우        |                  |          |                     |           |    |
|    | 변경  | 의당   | 가산 | 산18-5  | 임야    | 29,857  | 21,086 |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339    | 이정우        |                  |          |                     |           |    |
| 21 | 기정  | 의당   | 가산 | 산18-6  | 임야    | 3,575   | 56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   |                  | (주)한일시멘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근저당권, 지상권 |    |
|    | 변경  | 의당   | 가산 | 산18-6  | 임야    | 3,575   | 58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   |                  | (주)한일시멘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근저당권, 지상권 |    |
| 22 | 기정  | 의당   | 가산 | 산18-7  | 임야    | 33,261  | 29,34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   |                  | (주)한일시멘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근저당권, 지상권 |    |
|    | 변경  | 의당   | 가산 | 산18-7  | 임야    | 33,261  | 29,55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   |                  | (주)한일시멘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근저당권, 지상권 |    |
| 23 | 기정  | 세종장군 | 송학 | 산10    | 임야    | 156,892 | 1,0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주)한일시멘트3인 |                  |          |                     |           |    |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무상귀속  
종류와 그 세부목록

의당복합농공단지 토지조서 (공주시 무상귀속)

| 일련<br>번호 | 소재지 |    | 지<br>번 | 지<br>목 | 지적분할    |          | 공주시 무상귀속 |          |            | 소<br>유<br>자 |                      | 비<br>고 |
|----------|-----|----|--------|--------|---------|----------|----------|----------|------------|-------------|----------------------|--------|
|          | 면   | 리  |        |        | 지적      | 편입지<br>적 | 면적       | 공시지<br>가 | 금 액        | 성 명         | 주 소                  |        |
| 1        | 의당  | 가산 | 44-3   | 답      | 821     | 145      | 86.0     | 33,200   | 2,855,200  | 이용현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199 |        |
| 2        | 의당  | 가산 | 44-6   | 답      | 605     | 495      | 282.8    | 33,200   | 9,388,960  | ㈜한일시멘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
| 3        | 의당  | 가산 | 49-1   | 임      | 2,273   | 1,181    | 653.2    | 4,270    | 2,789,164  | ㈜한일시멘트외4인   | "                    |        |
| 4        | 의당  | 가산 | 54-1   | 임      | 25,275  | 3,238    | 2,068.4  | 5,150    | 10,652,260 | "           | "                    |        |
| 5        | 의당  | 가산 | 54-2   | 임      | 643     | 643      | 538.1    | 3,840    | 2,066,304  | "           | "                    |        |
| 6        | 의당  | 가산 | 332    | 구거     | 3,419   | 292      | 54.9     | 9,730    | 534,177    | 국           | 농림수산식품부              |        |
| 7        | 의당  | 가산 | 산15    | 임      | 29,222  | 2,250    | 1,000.7  | 4,140    | 4,142,898  | ㈜한일시멘트외4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        |
| 8        | 의당  | 가산 | 산15-2  | 임      | 935     | 179      | 3.9      | 4,270    | 16,653     | "           | "                    |        |
| 9        | 의당  | 가산 | 산16    | 임      | 95,729  | 10,201   | 3,210.7  | 5,570    | 17,883,599 | "           | "                    |        |
| 10       | 의당  | 가산 | 산16-2  | 임      | 932     | 274      | 16.4     | 3,840    | 62,976     | "           | "                    |        |
| 계        |     |    |        |        | 159,854 | 18,898   | 7,915.1  |          | 50,392,191 |             |                      |        |

※ 귀속토지와 별도로 토지에 설치되는 진입도로 시설물도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됨  
(공사비 3,743백만원)

의당복합농공단지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 일련<br>번호 | 소재지 |    | 지<br>번 | 지<br>목 | 지적분할  |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          |            | 소<br>유<br>자 |       | 비<br>고 |
|----------|-----|----|--------|--------|-------|----------|------------|----------|------------|-------------|-------|--------|
|          | 면   | 리  |        |        | 지적    | 편입지<br>적 | 면적         | 공시지<br>가 | 금 액        | 성 명         | 주 소   |        |
| 1        | 의당  | 가산 | 330-26 | 천      | 4,389 | 1,739    | 1,739.0    | 24,800   | 43,127,200 | 국           | 국토해양부 |        |
| 계        |     |    |        |        | 4,389 | 1,739    | 1,739.0    |          | 43,127,200 |             |       |        |

## ▣ 의당복합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의당복합농공단지(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한일시멘트(주) 대표 원인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

- 주요변경사항 : 단지내 및 진입도로구간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현황측량자료와 주변지형을 고려한 토지의 효율적인 획지분할을 실시하여 현지지형과 일치하도록 획지 및 구역계를 조정하는 계획으로 변경

4. 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나. 면 적 : 기정 - 149,022㎡

변경 - 147,933㎡ (감1,089㎡)

5. 사업의 개발기간(변경)

◦ 개발기간 : 기정-2008년 ~ 2012년 12월 31일

변경-2008년 ~ 2013년 6월 30일

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실음 생략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변경) 제9호, 10호와 동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불임

8. 관계도서는 공주시청(경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고시합니다.

9. 행위의 제한

◦ 의당복합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붙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면 적 (㎡)   |             |           | 구성비(%) | 비 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149,022.0 | 감) 1,089.0  | 147,933.0 | 100.0  |     |
| 관리지역   | 149,022.0 | 감) 931.0    | 147,933.0 | 100.0  |     |
| 보전관리지역 | 15,633.0  | 감) 15,633.0 | -         | -      |     |
| 생산관리지역 | 1,046.0   | 감) 1,046.0  | -         | -      |     |
| 계획관리지역 | 132,185.0 | 증) 15,748.0 | 147,933.0 | 100.0  |     |
| 농림지역   | 158.0     | 감) 158.0    | -         | 100.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 용적률 (%) | 변 경 사유  |
|----------|---------|---|----------------------|---------|---|
|          |         | 기 정   | 변 경                  |         |   |
| ①        | 의당면 가산리 | 계획관리지역 : 132,185.0㎡<br>보전관리지역 : 15,633.0㎡<br>생산관리지역 : 1,046.0㎡<br>농림지역 : 158.0㎡ | 계획관리지역<br>147,933.0㎡ | 100.0   | 단지내 및 진입도로구간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현황측량자료와 주변지형을 고려한 토지의 효율적인 획지분할을 실시하여 현지지형과 일치하도록 획지 및 구역계 조정. |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 기 정 | -       | 의당복합<br>농공단지 | 산업개발<br>진흥지구 | 의당면<br>가산리 | 149,022 | 2009. 2. 4 |    |
| 변 경 | -       | 의당복합<br>농공단지 | 산업개발<br>진흥지구 | 의당면<br>가산리 | 147,933 | 2009. 2. 4 |    |

※ 변경사유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와 동일

##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①        | 의당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 유통형 |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 149,022 | 감)1,089 | 147,933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위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①       |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정 : 149,022㎡</li> <li>○ 변경 : 149,022㎡</li> <li>    감)1,089㎡</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및 진입도로구간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현황측량자료와 주변지형을 고려한 토지의 효율적인 획지분할을 실시하여 현지지형과 일치하도록 획지 및 구역계 조정.</li> </ul>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국지도로 | 518.0  | 오폐수 처리장    | 연구·지원 시설용지 | 단지내도로 | 농공단지   |        |    |
| 변경 | 소로 | 1  | 1  | 10     | 국지도로 | 512.8  | 오폐수 처리장    | 연구·지원 시설용지 | 단지내도로 | 농공단지   |        |    |
| 기정 | 소로 | 1  | 2  | 10     | 국지도로 | 854.3  | 가산리 44-6번지 | 소로1-1      | 진입도로  |        |        |    |
| 변경 | 소로 | 1  | 2  | 10     | 국지도로 | 849.5  | 가산리 44-6번지 | 소로1-1      | 진입도로  |        |        |    |

#### ■ 도로(변경)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로 1-1<br>소로 1-2 | 소로 1-1<br>소로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연장 및 면적<br/>B = 10m<br/>L = 1,372.3m → 1,362.3m</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입도로 초입부 및 단지부의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li> </ul> |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m <sup>2</sup>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⑤        | 주차장 | 의당면 가산리 산 18-2입 일원 | 1,509.0             | 감)1,509.0 | -     |         |    |
| 변경 | ⑤-1      | 주차장 | 의당면 가산리 산 18-2입 일원 | -                   | 증)510.3   | 510.3 |         |    |
| 변경 | ⑤-2      | 주차장 | 의당면 가산리 산 18-7입 일원 | -                   | 증)963.1   | 963.1 |         |    |

■ 주차장(변경)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
| ⑤-1<br>⑤-2 | 주차장 | • 주차장 위치이동 | • 주차장 위치를 변경 및 이용객의 공장진입이 용이하도록 이원화 시켜 이용객의 효율성 도모 |    |

다.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m <sup>2</sup>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⑦        | 녹지  | 완충녹지    | 의당면 가산리 산16입 일원 | 38,869.0            |         |          |         |    |
| 변경 | ⑦        | 녹지  | 완충녹지    | 의당면 가산리 산16입 일원 | 38,869.0            | 증)622.1 | 39,491.1 |         |    |

■ 녹지(변경)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
| ⑦        | 녹 지 | • 녹지면적 조정 | • 단지내 및 진입도로구간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현황측량자료와 주변지형을 고려한 토지의 효율적인 획지분할을 실시하여 현지지형과 일치하도록 획지 및 구역계 조정에 따른 면적 조정. |    |

라. 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m <sup>2</sup> )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④        | 유수지 | 저류시설    | 의당면 가산리 산18-7임 일원 | 1,900.0             |         |         |         |     |
| 변경 | ④        | 유수지 | 저류시설    | 의당면 가산리 산18-7임 일원 | 1,900.0             | 증)157.9 | 2,057.9 |         |     |

■ 유수지(변경)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 고 |
|----------|-----|------------|--|-----|
| ④        | 유수지 | • 유수지면적 조정 | • 유수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현황측량자료에 따른 면적 조정. |     |

마. 환경기초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m <sup>2</sup> )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③        | 수질오염 방지시설 | 오·폐수 처리장 | 의당면 가산리 산18-7임 일원 | 1,841.0             |         |         |         |     |
| 변경 | ③        | 수질오염 방지시설 | 오·폐수 처리장 | 의당면 가산리 산18-7임 일원 | 1,841.0             | 감)306.0 | 1,535.0 |         |     |

■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 고 |
|----------|-----------|----------------|--|-----|
| ③        | 수질오염 방지시설 | • 오·폐수처리장면적 조정 | • 오·폐수처리장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현황측량 자료에 따른 면적 조정. |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가.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위 치                       | 도면번호 | 면적 (㎡)    |           | 가구 및 획지 |           |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위 치     | 면적(㎡)     |           |                                      |
|                           |      |           |           |         | 기정        | 변경        |                                      |
| 합 계                       |      | 149,022.0 | 147,933.0 | -       | 149,022.0 | 147,933.0 |                                      |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7번지 일원 | ①~⑧  | 149,022.0 | 147,933.0 | ①~②     | 85,865.0  | 83,053.8  | 산업시설<br>(공장 및 지원시설)                  |
|                           |      |           |           | ③~⑧     | 24,288.0  | 25,388.1  | 공공시설용지<br>(도로, 주차장, 저류지, 조경지, 오수처리장) |
|                           |      |           |           | ⑦       | 38,869.0  | 39,491.1  | 녹지용지                                 |

#### 나.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 공장용지(변경)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 획 지            |           |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위 치            | 면적 (㎡)    |          |         |
|      |      |          |          |                | 기정        | 변경       |         |
| 합 계  |      | 85,865.0 | 83,408.6 |                | 85,865.0  | 83,053.8 |         |
| ②    | ②-1  | 85,865.0 | 83,053.8 | 가산리 산18-7번지 일원 | 10,151.0  | 7,290.9  | 연구·지원시설 |
| ②    | ②-2  |          |          |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 7,886.0   | 7,960.7  | 연구·지원시설 |
| ①    | ①-1  |          |          | 가산리 60-1번지 일원  | 57,641.99 | 56,710.6 | 공장용지    |
| ①    | ①-2  |          |          | 가산리 60-1번지 일원  | 10,186.01 | 11,091.6 | 공장용지    |

■ 공공시설용지(변경)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 획 지            |          |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위 치            | 면적 (㎡)   |          |         |
|      |      |          |          |                | 기정       | 변경       |         |
| 합 계  |      | 24,228.0 | 25,388.1 |                | 24,288.0 | 25,388.1 |         |
| ⑤    | ⑤-1  | 24,228.0 | 25,388.1 |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 1,509.0  | -        | 주차장     |
| ⑤    | ⑤-1  |          |          |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 -        | 510.3    |         |
| ⑤    | ⑤-2  |          |          | 가산리 산18-7번지 일원 | -        | 963.1    |         |
| ⑧    | ⑧-1  |          |          | 가산리 60-1번지 일원  | 6,064.0  | 5,845.3  | 조경지     |
| ④    | ④-1  |          |          | 가산리 산18-7번지 일원 | 1,900.0  | 2,057.9  | 저류지     |
| ③    | ③-1  |          |          | 가산리 산18-7번지 일원 | 1,841.0  | 1,535.0  | 폐수종말처리장 |
| ⑥    | ⑥-1  |          |          | 가산리 산16번지 일원   | 12,974.0 | 14,476.5 | 도로      |

■ 녹지용지(변경)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 획 지          |          |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위 치          | 면적 (㎡)   |          |      |
|      |      |          |          |              | 기정       | 변경       |      |
| 합 계  |      | 38,869.0 | 39,491.1 |              | 38,869.0 | 39,491.1 |      |
| ⑦    | ⑦-1  | 38,869.0 | 39,491.1 | 가산리 산16번지 일원 | 38,869.0 | 39,491.1 | 완충녹지 |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

■ 공장용지(변경없음)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 ②    | ②-1<br>(연구·지원시설)<br>(의당면 가산리 산18-7번지 일원)    | 용도    | 허용               |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 시설     |                                     |  |
|      |   |       | 불허               |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
|      |   | 건폐율   | 60% 이하           | 높이<br>(층수)   | 20m 이하<br>(4층 이하)                   |  |
|      |   | 용적률   | 150% 이하          |  |                                     |  |
|      |   | 배치·형태 |                  |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                                     |  |
|      |   | 색채    | 주조색              |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br>•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  |
|      |   |       | 보조색              |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                                     |  |
|      | 건축선   |       | 3m               |  |                                     |  |
|      | ②-2<br>(연구·지원시설)<br>(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 용도    | 허용               |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 시설     |                                     |  |
|      |   |       | 불허               |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
|      |   | 건폐율   | 60% 이하           | 높이<br>(층수)   | 20m 이하<br>(4층 이하)                   |  |
|      |   | 용적률   | 150% 이하          |  |                                     |  |
|      |   | 배치·형태 |                  |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                                     |  |
|      |   | 색채    | 주조색              |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br>•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  |
| 보조색  |   |       |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  |                                     |  |
| 건축선  |   | 3m    |                  |  |                                     |  |
| ①    | ①-1<br>①-2<br>(공장용지)<br>(의당면 가산리 60-1번지 일원) | 용도    | 허용               |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  |
|      |   |       | 불허               |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
|      |   | 건폐율   | 60% 이하           | 높이<br>(층수)   | 20m 이하<br>(4층 이하)<br>(구조물높이 85m 이하) |  |
|      |   | 용적률   | 150% 이하          |  |                                     |  |
|      |   | 배치·형태 |                  |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                                     |  |
|      |   | 색채    | 주조색              |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br>•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  |
|      |   |       | 보조색              |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                                     |  |
| 건축선  |   | 3m    |                  |  |                                     |  |

■ 공공시설용지(변경)

| 가구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
| ⑤    | ⑤-1<br>⑤-1<br>⑤-2<br>(주차장)<br>(의당면 가산리 산18-7번지 일원) | 용도    | 허용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br>• 주차장 및 부대시설  |      |  |  |
|      |  |       | 불허                |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  |
|      |  | 건폐율   | 60% 이하            | 높이<br>(층수)   | 4층이하 |  |  |
|      |  | 용적률   | 150% 이하           |  |      |  |  |
|      |  | 배치·형태 |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  |      |  |  |
|      |  | 색채    | 주조색               |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br>•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  |  |
|      |  |       | 보조색               | • 원색사용가능하나, 전체면적 30%를 넘지 않도록 함                     |      |  |  |
| 건축선  | 3m   |       |                   |  |      |  |  |
| ④    | ④-1<br>(저류지)<br>(의당면 가산리 산18-7번지 일원)               | 용도    | 허용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8조 저류시설(부대시설 포함) |      |  |  |
|      |  |       | 불허                |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  |
|      |  | 건폐율   | 60% 이하            | 높이<br>(층수)   | 4층이하 |  |  |
|      |  | 용적률   | 150% 이하           |  |      |  |  |
|      |  | 배치·형태 |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  |      |  |  |
|      |  | 색채    | 주조색               |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br>•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  |  |
|      |  |       | 보조색               |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      |  |  |
| 건축선  | 3m   |       |                   |  |      |  |  |
| ③    | ③-1<br>(폐수종말처리장)<br>(의당면 가산리 산18-7번지 일원)           | 용도    | 허용                |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     |      |  |  |
|      |  |       | 불허                |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  |
|      |  | 건폐율   | 60% 이하            | 높이<br>(층수)   | 4층이하 |  |  |
|      |  | 용적률   | 150% 이하           |  |      |  |  |
|      |  | 배치·형태 |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  |      |  |  |
|      |  | 색채    | 주조색               |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br>•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  |  |
|      |  |       | 보조색               |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      |  |  |
| 건축선  | 3m   |       |                   |  |      |  |  |

## 대룡천 하상준설공사 시행계획고시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대룡천 하상준설공사에 대하여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 공 주 시 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대룡천 하상준설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하상의 준설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개 요 : 하상준설 40,700m<sup>3</sup>(L=620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 청흥리(대룡천 지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공주시장(신풍면장)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신풍면 안뜸길 14)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2013. 3. ~ 2013. 6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관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7. 설계도서 : 공주시 재난관리과 및 신풍면사무소 비치
8. 사업비 투자내역 : 192백만원
9.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명 : 대룡천 (지방하천)
  - 위치 및 사업규모 : 상기와 같음
10. 폐천부지의 발생예상면적 : 해당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재난관리과 (☎840-2269) 및 신풍면사무소 (☎840-2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학지구 농경지리모델링 지적공부확정 · 시행 공고

우리시 『소학지구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 확정·시행됨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 공 주 시 장

1. 사업 지구명 : 소학지구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2. 사업 기간 : 2010. 06. 01. ~ 2012. 03. 20.
3. 준공 인가일 : 2012. 12. 17
4. 공고 기간 : 2013. 03. 06. ~ 2013. 03. 12.(7일간)

| 구 분                        | 지 구 명    | 농경지리모델링<br>(소학지구) | 비 고             |
|----------------------------|----------|-------------------|-----------------|
| 시 행 지 면 적(m <sup>2</sup> ) | 종 전      | 207,517           | 필지별<br>조서<br>별첨 |
|                            | 확 정      | 206,642           |                 |
| 지 적 공 부<br>조 제 현 황         | 토 지 대 장  | 122필지             |                 |
|                            | 경계점좌표면적부 | 122필지             |                 |
| 지 적 공 부<br>폐 쇄 현 황         | 토 지 대 장  | 164필지             |                 |

5. 알 린 사 항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토지과(☎041-840-846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인 폐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5일

## 공 주 시 장

1. 폐기공인 : 공주시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외 6개
2. 폐 기 일 : 2013. 3. 15.
3. 폐기공인 인영 및 사유

| 소 관<br>부서명   | 공 인 명                                | 인 영   | 폐기근거(사유)   |
|--------------|--------------------------------------|---|--|
| 인사<br>담당관실   | 공주시보통징계위원회<br>위원장의인                  |  |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4호<br>-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br>-공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
| 정보감사<br>담당관실 | 공주시관용심사위원회인                          |  | 2012. 4. 2일자 관용심사위원회의<br>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
| 회계과          | 국특재산계정재정경제부소관<br>충청남도공주시<br>분임채권관리관인 |  | 2011. 1. 1일자 회계변경<br>(특별회계 → 일반회계)                             |

| 소 관<br>부서명 | 공 인 명                                | 인 영   | 폐기근거(사유)                                       |
|------------|--------------------------------------|---|--|
|            | 국특재산계정재정경제부소관<br>충청남도공주시<br>분임세입징수관인 |  | 2011. 1. 1일자 회계변경<br>(특별회계 → 일반회계)             |
|            | 국특재산계정재정경제부소관<br>충청남도공주시<br>재산관리관인   |  | 상동   |
| 토지과        |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br>특별회계<br>공주시세입징수관인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br>제18조2항<br>(세외수입시스템 이용으로 미사용) |
| 보건과        | 보건사회부소관일반회계<br>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  | 1994.12.23일자 정부조직법<br>일부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 개편       |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및 『공주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1일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및 공주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6호)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현행규정 내용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국토해양부에서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고자 2012년 도로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공주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의 부과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가. 제3조(적용범위)

- 현 행 : 시·군도중 4차로 이상의 도로와 시관할 국도 및 지방도
- 개정안 : 시·군도중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시관할 국도 및 지방도

나. 제5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현 행 :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m이내의 구간
- 개정안 :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설계속도가 60km 이하인 경우 300m, 설계속도가 60km이상인 경우 350m이내의 구간

다. 제5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신설

-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 2차로 이상이며 그차도의 폭이 6m이상인 도로
- 관할경찰서장등 교통안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가.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 현 행 :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시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개정안 : 1㎡이하 1십만원 1㎡초과하는데 매1㎡마다 1십만원을 추가하여 1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다.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건설과 (주소 : 314-090 공주시 봉황로 1)

o 전화 : 041-840-2484

o FAX : 041-840-2498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변속차로”라 함은”을 ““변속차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테이퍼”라 함은”을 ““테이퍼”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대시설”이라 함은”을 ““부대시설”이란”으로, “가드레일”을 “보호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류화시설”이라 함은”을 ““도류화시설”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시·군도 중 4차로”를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시·군도 중 2차로”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관할”을 “법 제20조에 따른 공주시 관할”으로, “기타”를 “그밖”으로,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을 “따른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허가하여”를 “허가해”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써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

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별표 4의2에 따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 :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 버스 정차대, 측도(側道)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제6조제1항 중 “강도”를 “세기”로 한다.

제8조제4호 후단 중 “측구로”를 “옆도랑으로”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가드레일 기타”를 “보호난간 그 밖에”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측구를”을 “옆도랑을”로 하며, 같

은 조 제7호 본문 중 “설치하는”을 “설치할”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결로”를 각각 “변속차로”로,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를 “보호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가드레일”을 “보호난간”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가드레일”을 “보호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당해 연결로 등외에는”을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로, “있어서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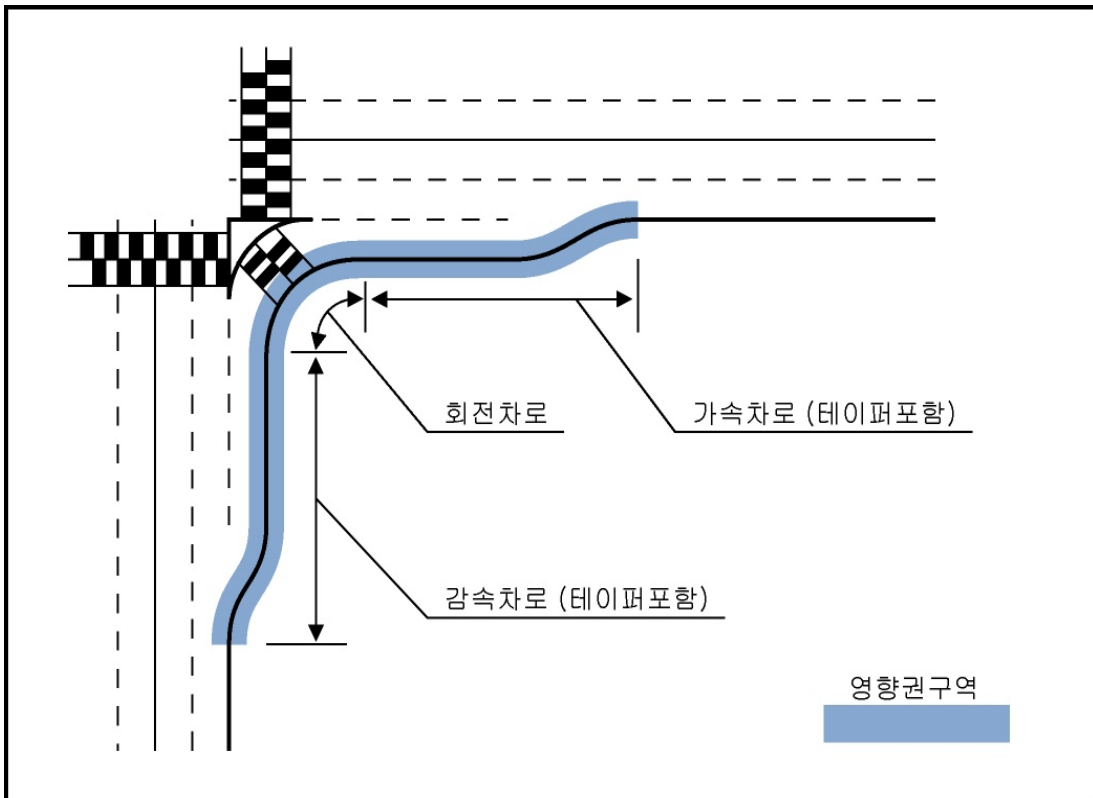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제5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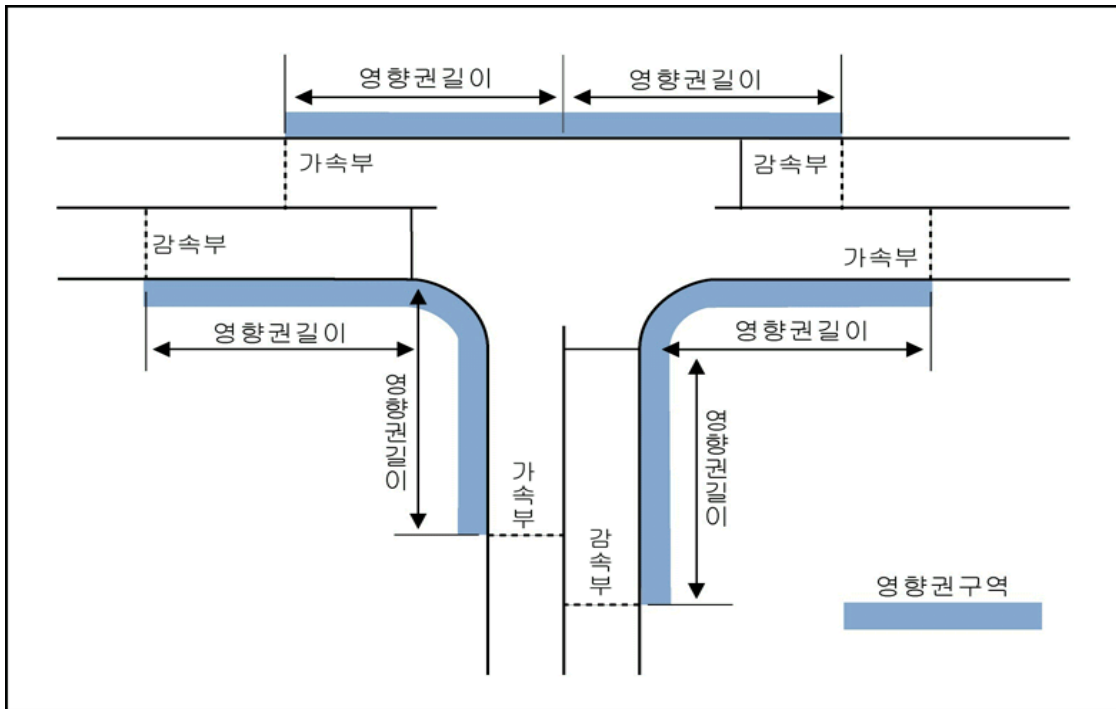
2.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교차로 영향권 길이(미터) |      |
|---------------|----------------|------|
|               | 비도시지역          | 도시지역 |
| 50            | 50             | 30   |
| 60            | 70             | 40   |
| 70            | 90             | 60   |
| 80            | 120            | 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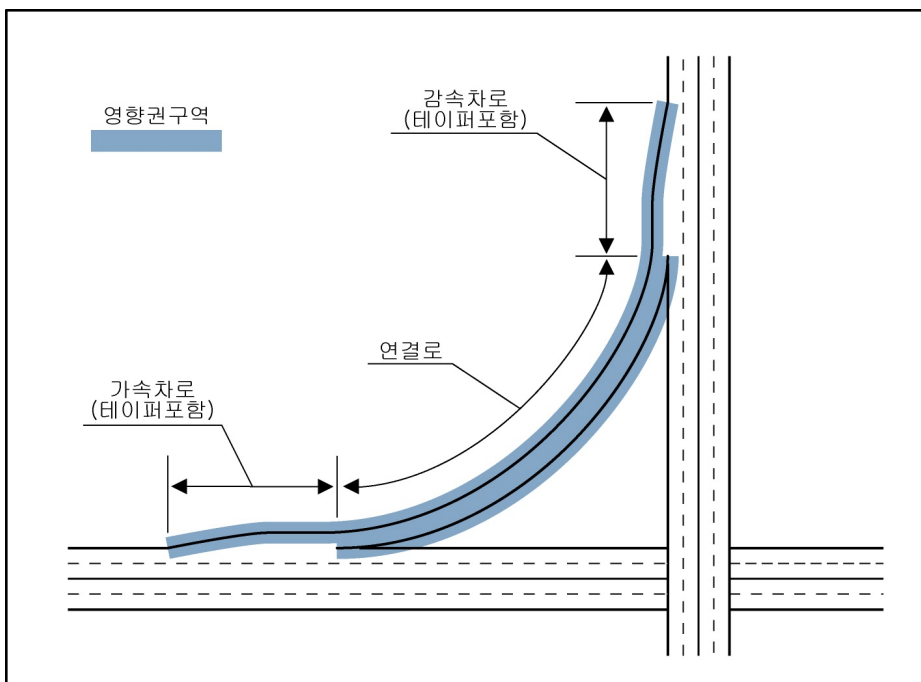
나. 교차로 영향권의 길이 측정기준은 아래 예시도와 같이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적용하며, 세갈래교차로의 직진 차로부에는 교차로 중심에서부터 적용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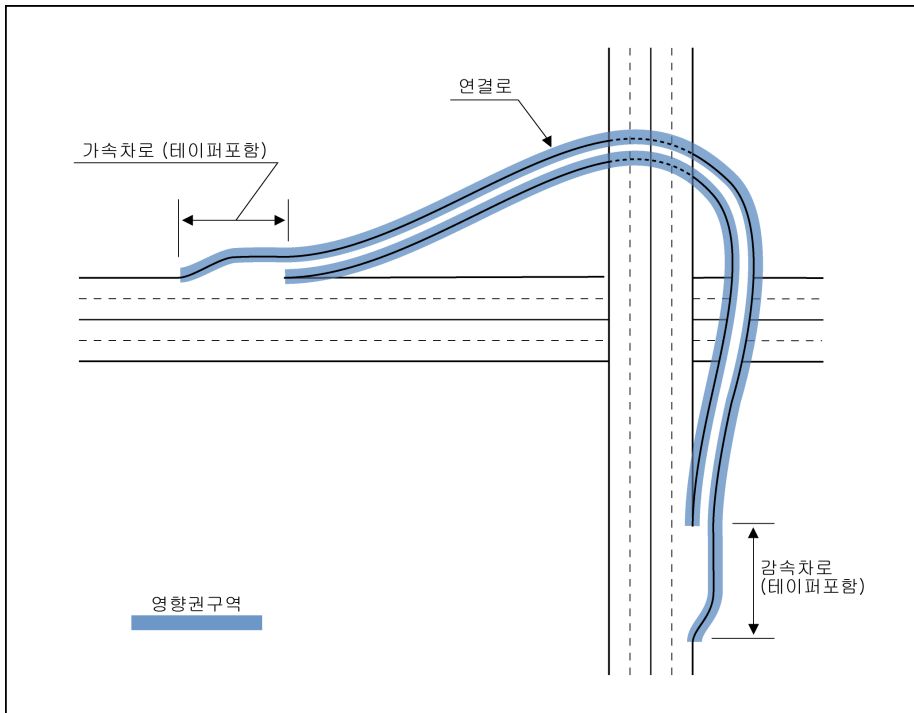


3.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1>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예시도 2>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별표 4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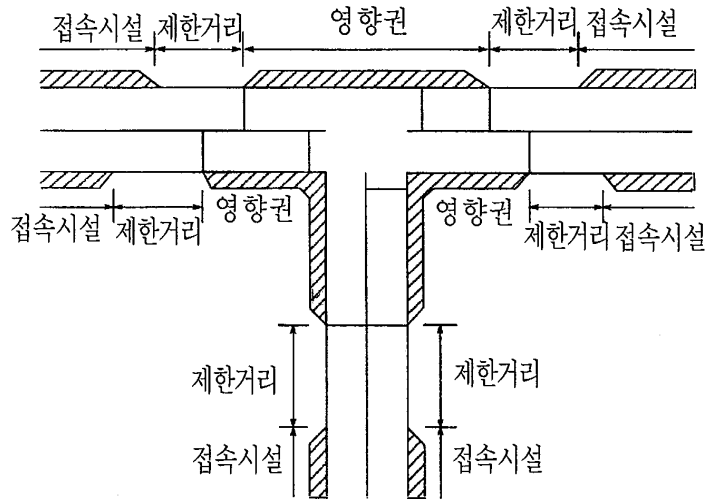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5조제4호 관련)

(단위: 미터)

| 구 분                       | 4차로 이상 | 2차로 |
|---------------------------|--------|-----|
|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 60     | 4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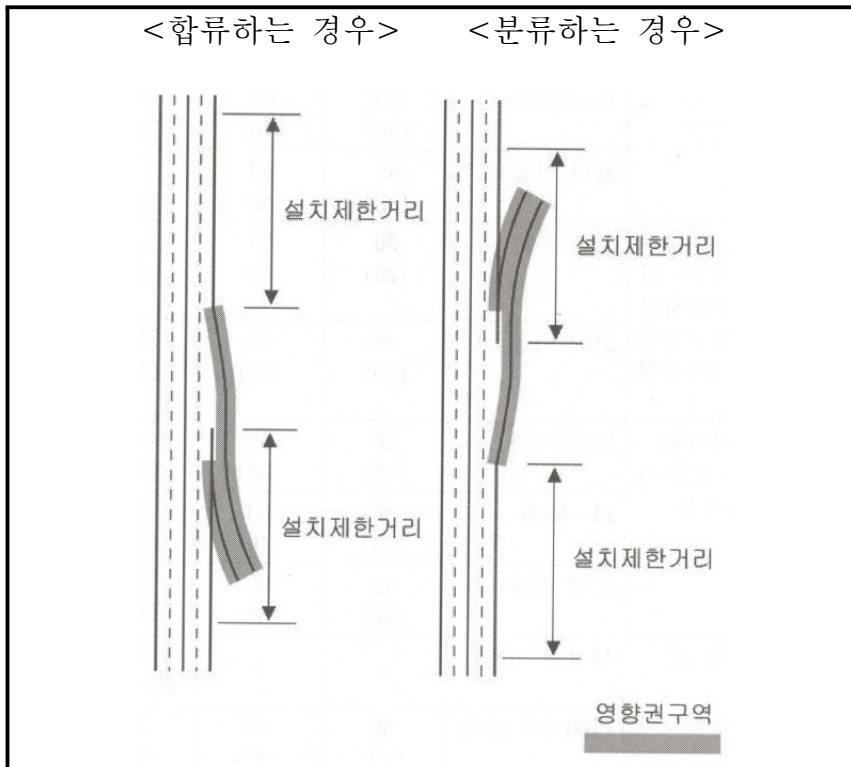
비 고

1. 평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2. 입체교차로의 경우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  
 · 후방으로 설치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예시도> 입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 통로 <u>기타</u>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br/>-----<br/>----- <u>그 밖</u>-----<br/>-----<br/>-----<br/>-----<br/>-----.</p>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변속차로”</u> 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p> <p>2. <u>“테이퍼”</u> 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p> <p>3. <u>“부대시설”</u> 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p> | <p>제2조(정의) -----<br/>----- <u>뜻은</u> -----<br/>-----.</p> <p>1. <u>“변속차로”</u> 란 -----<br/>-----<br/>-----<br/>-----<br/>-----.</p> <p>2. <u>“테이퍼”</u> 란 -----<br/>-----<br/>-----<br/>-----<br/>-----<br/>-----<br/>-----.</p> <p>3. <u>“부대시설”</u> 이란 -----<br/>-----</p> |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  
한다.

4. “도류화시설” 이라 함은 차  
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  
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시  
·군도 중 4차로 이상의 도로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관할 국도, 지방도의 우측으  
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  
(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  
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  
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  
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 보호난간  
-----  
-----  
-----  
-----.

4. “도류화시설” 이란 -----  
-----  
-----  
-----  
-----  
-----.

제3조(적용범위) -----  
-----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시·군  
도 중 2차로-----  
법 제20조에 따른 공주시 관할-  
-----  
----- 그밖-----  
-----  
----- 다른 연결을 제외한다)하  
는 경우에 -----.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붙여야 ----.

1. ·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  
-----  
-----  
-----  
-----.

제5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  
----- 대해서-  
----- 허가해  
-----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  
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  
써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이  
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1. (생략)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별표 4의 교차로 주변(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

4.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별표 4의2에 따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 거리 이내의 구간[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신 설>

제6조(연결로등의 포장 등) ①연결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터를 초과하는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 버스 정차대, 측도(側道)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 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6조(연결로등의 포장 등) ①-----  
-----  
----- 세기-----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배수시설) -----  
-----  
-----.

1. ~ 3. (현행과 같음)

4.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9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생략)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

4. -----  
-----  
-----  
-----  
-----  
-----  
-----  
-----  
-----  
-----  
----- 옆도랑으로 -----

제9조(분리대) -----  
-----  
-----.

1. (현행과 같음)
2. ----- 보호난간 그 밖에 ----- 인공구조물-----  
-----  
-----  
-----  
-----
3. (현행과 같음)
4. -----  
-----  
-----  
-----  
-----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6. (생략)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 등이 별표 2중 평행식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0조(연결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연결로 등의 노면이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  
-----  
-----  
옆도랑을 -----

5.·6. (현행과 같음)

7. -----  
-----  
----- 설치할 -----  
-----  
-----  
-----  
-----  
-----  
-----  
-----  
-----  
-----  
-----

제10조(변속차로 -----) -----  
-----  
-----.

1. (현행과 같음)

2. 변속차로 ----- 변속차로  
-----  
-----  
-----

연석,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3. (생략)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1조(부대시설) 연결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부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연결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2조(공사시행) 당해 연결로 등 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에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 등의 공사를

----- 보호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

3. (현행과 같음)

4. -----  
-- 보호난간 -----  
-----

제11조(부대시설) 변속차로-----  
-----  
-----.

1. 보호난간 -----  
-----  
-----

2. 변속차로 등-----  
-----  
-----  
-----

제12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  
-----  
-----  
-----  
--- 변속차로-----

|   |   |
|---|---|
| <p>먼저 시행하여야 한다.</p>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u><br/><u>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br/>으로 정한다.</p> | <p>-----.</p> <p>제13조(시행규칙) ----- <u>시행</u><br/><u>에</u> -----<br/>-----.</p> |
|---|---|

# 관련 법령 발췌문

## 【도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3. "국가지원지방도"란 지방도(地方道)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도로 원표(元標),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나 도로의 방호(防護)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 다. 도로에 연접(連接)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 라.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5.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서로 그 효용을 함께 하는 제방, 언제(堰堤),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시도) 시도는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4조(군도) 군도는 군(郡)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도(지선을 포함한다):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속국도
2.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
3.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국도
4. 국도대체우회도로

제64조(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①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전용도로나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도: 「도로법」 제8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라 함은”을 “도로란”으로, “도로로서”를 “도로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단점용이라 함은”을 “무단점용이란”으로, “호의 1”을 “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를 “자에게는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이를 납부”를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를 “정할때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절차에 관하여는”을 “절차는”으로 한다.

제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u>도로</u>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u>도로로서</u>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p> <p>②도로의 <u>무단점용이라</u> 함은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u>호의 1</u>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①시장은 <u>정당한 사유없이</u>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u>호의 1</u>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u>자에</u> 대하여 <u>20만원 이하의 과태료</u>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p> <p>② (생략)</p> <p>③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p> | <p>제2조(정의) ①----- <u>도로</u>란 -----<br/> <u>도로로써</u>-----<br/>         -----<br/>         -----.</p> <p>②----- <u>무단점용이란</u>-----<br/>         -----<br/>         -----<br/>         ----- <u>호</u>-----<br/>         -----.</p> <p>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①-----<br/>         ----- <u>사유 없이</u> -----<br/>         ----- <u>호의 어느 하나</u> -----<br/>         ----- <u>자에게는</u> -----<br/> <u>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u> -----<br/> <u>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u> -----<br/>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br/>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p> |

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한 후 과태료 금액·위반사실·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  
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  
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분  
다.

⑤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합  
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야 한다.

⑥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  
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  
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 해당 -----  
-----  
-----  
----- 납부-----  
-----  
-----.

④----- 제3항에 따라 -----  
-----  
-----  
-----  
-----.  
-----  
-----  
-----.

⑤----- 정할  
때에는 해당 -----  
-----  
-----.

⑥----- 절차는  
-----  
-----.  
-----  
-----.

제4조(시행규칙) -----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에 -----  
-----.

# 관련법령 발췌문

## 【도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3. "국가지원지방도"란 지방도(地方道)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 원표(元標),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나 도로의 방호(防護)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다. 도로에 연접(連接)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라.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5.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서로 그 효용을 함께 하는 제방, 언제(堰堤),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도로법시행령】**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청이 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5 제2호나목·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라 감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